

## 제37기 의안설명서

### 제1호 의안

####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안내용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7기 재무제표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 1.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

- 영업보고서 참조

##### 2.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영업보고서 참조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현금배당 : 보통주 주당 102원  
우선주 주당 347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안)
전문	<p>주식회사 풀무원(이하 “풀무원 또는 “이 회사”)은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환경적(Environmental)’ 가치 창출을 ‘풀무원의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p> <p>1) 경제적 가치 : 안전, 안심, 건강의 가치를 담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p> <p>2) 사회적 가치 : 법과 풀무원 바른마음경영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경영과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기업 경영으로 우리 사회의 공존과 협력사 및 조직원 모두를 위한 더 큰 효익을 창출한다.</p> <p>풀무원은 풀무원농장 원경선 원장의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업 풀무원의 브랜드정신으로 계승하여,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기업의 미션으로 진화 시켜왔다. 풀무원은 LOHAS 사업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바른먹거리(식생활) 사업과 건강생활문화 사업을 풀무원의 LOHAS 핵심사업으로 하여 고객의 몸과 마음의 건강 및 행복 증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구 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이 주는 가치를 사회에 확산하는데 공헌해야 한다.</p>	<p>매출, 수익 측면에서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인 LOHAS 기업 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풀무원의 중장기 목표이다. 풀무원은 LOHAS 가치 실현을 위한 Product Leadership, Customer Intimacy, Operational Excellence, Environmental Stewardship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적절한 경영전략을 개발 및 실행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강력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Global No.1 LOHAS Company가 될 것이다.</p> <p>1. Trust(약속과 규정을 지키는 신뢰성) 개인간의 약속, 회사의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사업)을 수행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p> <p>2. Integrity(바른 직무수행을 위한 직업적 정직성) 회사의 바른마음경영 정신에 따라,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성실함과 사실의 숨김, 왜곡, 과장 없는 투명함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실행 및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p> <p>3. Solidarity(회사의 가치체계와 목표에 자기 업무를 연계시키는 연대의식) 회사의 LOHAS 미션과 핵심가치의 실천에 동참하고, 회사의 목표와 추진 전략에 자기 업무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창출에 공헌함을 의미합니다.</p> <p>4. Openness(늘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개방성) 편견과 차별 없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 협업함을 의미합니다.</p> <p>5. Passion(지식작업자로서 혁신에 몰입하는 열정)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업무)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전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p> <p>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풀무원”, 영문으로는 “Pulmuone Co., Ltd.(약호PMO)”라고 표기한다.</p> <p>제 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p> <p>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p> <p>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풀무원”, 영문으로는 “Pulmuone Corporate”라고 표기한다.</p> <p>제 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로 한다. 단, 제5항에 따른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p>
미션		

현 행	개 정(안)
④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4에 따른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은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의 3 (전환주식)	제 7 조의 3 (전환주식)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 7 조의 4 (상환주식)	제 7 조의 4 (상환주식)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7조의 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⑥ 제7조의 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안내용

제3-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남승우 선임의 건(재선임)

구분	성명	출생년도	추천인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기타비상무이사	남승우	1952년	이사회	• 現 (주)풀무원 기타비상무이사 • 前 (주)풀무원 대표이사	없음	본인	없음	없음	없음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부 선임의 건(재선임)

구분	성명	출생년도	추천인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이상부	1962년	이사회	• 現 (주)풀무원 전략경영원장 • 前 (주)아이씨엠디 사업지원실장	없음	임원	없음	없음	없음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원혜영 선임의 건(신규선임)

구분	성명	출생년도	추천인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외이사	원혜영	1951년	이사회	• 現 (사)웰다잉시민 운동 공동대표 • 前 국회의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덕균 선임의 건(신규선임)

구분	성명	출생년도	추천인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외이사	김덕균	1975년	이사회	• 現 IBK 투자증권 PE팀장 (이사) • 前 Tmax 그룹 기획 조정실 상무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안내용

제4-1호 의안: 감사위원 김영환 선임의 건(신규선임)

구분	성명	출생 년도	추천인	주요 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감사위원회	김영환	1958년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인공지능 연구원장</li> <li>• 前 KT네트웍스 대표이사</li> <li>• 前 KT대외협력실 실장</li> <li>• 前 KT비즈니스 부문 부문장</li> </ul>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제5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안내용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8기(2021년도)의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1. 제37기 이사 보수 한도액 : 5,000백만원

제37기 이사 보수 집행액 : 2,048백만원

\*이사보수집행에는 종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제외함

2. 제38기 이사 보수 한도액 : 5,000백만원

\*이사보수한도에는 종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제외함